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55호 2022. 3. 28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484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28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」에서 규정한 사무국 운영 및 업무내용을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의2)

-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
- 사무국은 지역사회보장, 행정실무, 예산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주민복지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juju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주민복지실

3) 팩스 : 054-650-696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(전화 : 054-650-6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☐ 자 치 법 규 명 :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간사 및 직원)”을 “(간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사무국)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
2.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군수·주민복지실장·보건소장·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③ ~ ⑨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(간사 및 직원) ①·② (생략)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 <신설>	제8조(간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삭제> 제8조의2(사무국)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.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